

— 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4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4월 29일, 7월 8일

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신 혜 련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를 수탁의료법인이 구미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2005년 7월에 공모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
-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병원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목적을 정함(협약안 제1조).
- 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산 및 장비를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관리권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

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함(협약안 제3조).

○ 위 수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, 재 수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(협약안 제4조).

○ 매년 병원운영 사업계획서를 수립, 회개년도 개시 90일전에 제출토록 함(협약안 제5조).

○ 병원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건물, 시설물, 장비 등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함(협약안 제6조).

○ 병원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고, 독립채산제·독립회계로 운영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(협약안 제7조).

○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계 규정에 의함(협약안 제8조).

○ 입원대상 환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, 전체병상중 의료보호환자 병상비율을 30%이상 유지하도록 함(협약안 제9조).

○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맞게 배치 운영토록 함(협약안 제10조).

○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수탁재산의 개·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(협약안 제11조).

○ 병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·검사토록 하고 시정·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요구 할 수 있도록 함(협약안 제12조).

○ 수탁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래 대로 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함(협약안 제13조).

○ 수탁자가 위·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는

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(협약안 제14조).

-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물권 및 관리운영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함(협약안 제15조)
-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과 자치법규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(협약안 제16조)
- 관계 법령의 제개정, 공익상 필요성,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함(협약안 제17조)
- 협약의 효력은 공증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함(협약서 제18조, 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
-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
- 보건복지부 사·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·운영지침
-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(붙임)
-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협약서안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본 동의안은 노인 치매 및 노인질환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
- 먼저 시직영시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민간사업자의 과다경쟁을 불식 시킬 수 있으나 부지매입 건축비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조직의 경직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가 되는 반면
- 위탁시 공공서비스 기능의 약화와 시설관리 및 통제기능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

인력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민·관이 연대감을 조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 위촉과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위탁 선정후 위탁관리에 대한 제반내용에 있어 계약단계부터 투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
- 아울러 본동의안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